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50% 이상 보조〉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82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50% 이상 보조	2

I. 개요

1.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82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7. 8.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가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50% 이상 보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법 제3조의2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각각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²⁾를 지정할 수 있음.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은 13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운영되어 별도의 국고보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26년도에는 ‘그냥 드림’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5억 4,6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음.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운영현황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1개소

- 기부식품등의 전국적인 모집·관리 제공
- 중앙물류센터 운영
- 식품등 기부 종합 정보시스템 운영
-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17개소

- 광역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교육
- 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조사 및 점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관련 예산 편성>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2631-308)’

-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 13억 9,300만원
 - 기부식품등 중앙물류센터 운영비: 6억 5,600만원
 - 푸드뱅크 국제교류사업: 3,000만원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운영 및 유지보수: 3억 2,600만원
 - 기부식품등 역량강화 및 제공체계 개선: 3억 5,600만원
 - 운영비: 2,500만원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지원(광역 인건비): 5억 4,600만원
 - (본예산)월310만원X27명X12개월X 50%
 - (추경)월310만원X7명X4개월X 50%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임.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국고 지원을 통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내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기본적인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단위 기관으로서, 전국적인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배분, 중앙물류센터 운영 등 국가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의 성격상 운영비 및 사업비는 국가가 보조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

따라서, 법률에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5년 지방이양된 사무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³⁾에 따라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심사 일정과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시행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입법 경과를 반영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110.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지역 간 기부식품 배분 체계의 편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대상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함.

다만, 본 사업은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2005년 지방 이양된 사무로 현행 보조금 법령체계 등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하기 곤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다시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보조금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및 감독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귀속되어 있어, 운영 재원의 과반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과 재정 부담 주체가 일치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행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국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지자체가 지역 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자체 예산을 우선 배정하도록 간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개정안 취지에 찬성하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외 인건비 국고보조를 명시하고, 광역지원센터별로 지자체 교부액이 상이하므로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한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찬성하며, 다만 전국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는 설치 목적과 업무범위 등이 다르므로 운영비·사업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전국센터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광역센터는 50%이상 보조하는 것이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497